

범죄유형에 따른 형사조정 특성에 관한 경험적 고찰* : 폭행 및 상해, 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이동원**·윤현석***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는 범죄유형에 따른 형사조정의 결과에 대해 실증적인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형사조정
의 성립율을 높일 수 있는 기법 및 단서, 형사조정시 사전 대비 사항 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2011년과 2015년 전국 58개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형사조정 중에서 각각 20건씩 무작위로 추출된 주요 사건 기록조사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범죄유형별 형사조정 과정 및 특성과 형사조정 후 처분 내용을 요약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폭행 및 상해 사건의 조정 성립율은 형사조정 사건 전체의 성립율보다 높았으며, 특히
폭행 사건의 성립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형사조정을 의뢰하기 전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필요하며, 형사조정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갈등 및 분노 감정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또한 치료비 등 직접적인 피해금액 이외에 경제적 손실과 향후 후유증을
반영한 피해 예상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의 차원에서 추가 금액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폭행 및 상해 사건은 조정이 성립된 후에 합의내
용이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해자를 믿지 못하는 피해자를 설득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형사조정을 통한 조정성립이 검찰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조정성립시 불기소 비율이 높았으며, 조정성립된 사건의 사건 처리 기간은
불성립 사건에 비해서 훨씬 짧았으며,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욱더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적 단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으
로 특히 형사조정위원들은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의 중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형사조정 성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주제어 : 형사조정, 형사조정위원, 피해회복, 폭행, 상해, 사기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주저자)

***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교신저자)

I. 서론

형사조정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화해와 조정을 통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며,¹⁾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이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등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 형사절차에 활용되고 있다.²⁾ 범죄피해자보호법(법률 제10283호)이 2010년 개정되어 형사조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형사조정에 의뢰되는 사건이 대폭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형사분쟁 해결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³⁾ 또한 형사조정이 초기에 사인간의 금전피해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경향을 보였다면 신체피해 관련 사건으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⁴⁾ 이는 형사조정이 금전적 피해의 회복에만 치중하지 않고 신체적 피해의 회복과 갈등 해결을 추구하는 형사조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범죄발생을 살펴보면, 형법범죄의 주요 범죄군 중에서는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

1) 박미숙이진국,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6-AA-06, 2016, 17.

2) 김용욱, “한국의 형사조정: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19(2), 2008, 212-214; 박미숙이진국, 위의 책, 재인용, 38.

3) <표 1> 형사조정 운용 실적(2011년-2016년 6월)

| 구분 | 총 사건수 | 의뢰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 총 사건 대비 의뢰율 | 처리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 성립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 성립율 |
|-------|-----------|-----------------------|----------------|-----------------------|-----------------------|------|
| 2011년 | 1,724,636 | 17,517(5.0) | 1.02 | 16,897(9.7) | 8,398(8.8) | 49.7 |
| 2012년 | 1,765,017 | 21,413(22.2) | 1.21 | 18,020(6.6) | 10,280(22.4) | 57.0 |
| 2013년 | 1,852,437 | 33,064(54.4) | 1.78 | 28,441(57.8) | 14,772(43.6) | 51.9 |
| 2014년 | 1,813,508 | 54,691(65.4) | 3.02 | 45,527(60.1) | 25,523(72.8) | 56.1 |
| 2015년 | 1,950,674 | 82,272(59.6) | 4.47 | 73,298(61.0) | 42,527(66.6) | 58.0 |
| 2016년 | 991,428 | 59,691(40.4) | 6.02 | 46,120(50.9) | 27,724(57.5) | 60.1 |

출처: 조균석, “형사조정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24(3), 2016, 209.

4) 형사조정사건의 유형별 분포가 2010년에는 금전피해 사건 616건(55.7%), 신체피해 사건 339건(30.7%)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에는 금전피해 사건 502건(46.3%), 신체피해 사건 433건(39.9%)으로 나타났(이동원·윤현석, “형사조정의 실시 현황과 결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 분석: 2010년과 2014년 형사조정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18(1), 2016, 182.

의 경우에는 2016년에 573,445건, 인구 10만명당 1,109건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재산범죄 중 사기범죄는 2016년 250,600건으로 인구 10만명당 484.8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07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 동안 사기범죄의 발생비는 2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력범죄(폭력)은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5년 인구 10만명당 482.7건, 2016년 487.2건으로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주요 강력범죄에서 폭행과 상해범죄는 2016년 228,710건으로 인구 10만명당 442.4건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418.1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처럼 폭행과 상해범죄의 증가는 최근 형사조정에서 신체피해 사건의 의뢰건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형사조정실무에서도 폭행 및 상해(29.1%)가 가장 많이 다루는 형사조정 사건이었으며, 다음으로 사기(27.0%), 임금체불(14.9%), 교통범죄(9.7%), 명예훼손 및 모욕(9.7%) 순으로 다루고 있었다. 아울러 형사조정에 가장 적합한 사건 유형은 폭행 및 상해(29.2%)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사기(16.4%), 명예훼손 및 모욕(16.0%), 임금체불(13.9%), 교통범죄(12.4%) 순으로 나타났다.⁶⁾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다.⁷⁾ 따라서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범죄로 인하여 손상된 당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매우 의미가 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지만 형사조정에 의뢰된 사건의 경우 쌍방사건이거나 경미한 상해사건이 대부분으로 검사가 형사조정을 의뢰했다는 것은 합의를 통한 해결을 사건 처리에 반영하겠다는 측면에서 형사조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사기죄 역시 양형기준이 도입된 후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가 증가하여 당사자 간의 조정(합의)이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될 수 있다.⁸⁾

5)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 8-17.

6) 박미숙이진국, 앞의 책, 117-124.

7)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8) 피고인의 행태는 양형기준 도입 후 크게 변화였는데,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의 비율은 약 8% 포인트, 피해자와 합의를 한 비율도 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대부분의 형사조정 사건은 단순폭행, 과실치상과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 사건으로 검사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기소해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며, 상해죄와 사기죄도 조정(합의)이 성립하는 경우 기소유예하거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성립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범죄유형별로 형사조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양한 요소들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조정에서 범죄유형별 결과에 대해서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형사조정의 성립율을 높일 수 있는 기법과 단서, 형사조정시 사전 대비 사항 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형사조정에 대한 기록조사 자료는 2011년(1,106건)과 2015년(1,074건) 전국 58개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형사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각 위원회에 의뢰된 형사조정 사건(총 2,180건)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조사대상인 주요 사건은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조정을 실시한 형사조정 사건 중에서 각각 20건씩 무작위로 추출된 사건 기록조사를 분석하였다. 특히 형사조정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폭행 및 상해, 사기 사건이 형사조정에서 각각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인정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형량이 감경됨을 감안하고 있다(임찰장지상오정일, “양형기준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형량의 평균과 편차에 대한 분석”,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15(1), 2018, 138-139.

II. 범죄유형별 형사조정 과정 및 특성

형사조정 사건별로 조정 성립율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행, 상해 사건의 조정 성립율은 형사조정 사건 전체의 성립율 62.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 사건의 성립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기 사건의 성립율은 49.0%에 머물고 있다.

<표 2> 형사조정 사건의 조정 성립 여부⁹⁾

| 구분 | | 성립여부 | | 계 | |
|-------|----|------|-------|-------|--------|
| | | 성립 | 불성립 | | |
| 전체 사건 | | 건수 | 1,351 | 829 | 2,180 |
| | | % | 62.0% | 38.0% | 100.0% |
| 주요 사건 | 폭행 | 건수 | 150 | 46 | 196 |
| | | % | 76.5% | 23.5% | 100.0% |
| | 상해 | 건수 | 302 | 107 | 409 |
| | | % | 73.8% | 26.2% | 100.0% |
| | 사기 | 건수 | 269 | 280 | 549 |
| | | % | 49.0% | 51.0% | 100.0% |

형사조정이 불성립된 사유 <표 3>을 보면, 폭행과 상해 사건은 형사조정 사건 전체에 비해서 ‘합의금액 불일치’로 인한 불성립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폭행과 상해 사건은 상대적으로 성립율은 높지만, 불성립의 경우는 합의금액 불일치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폭행 사건의 경우에 조정 거부로 인한 조정 불성립 비율이 17.8%와 10.1%로 사기 사건에 비해서 더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형사조정을 의뢰하기 전에 자발적인 동의 및 참여가 필요하며, 형사조정에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갈등과 분노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9) 이하에서 제시되는 각종 표에서는 해당 사례가 없거나 극히 적은 칸이 적지 않아 표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검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물론 해당 칸을 다른 칸과 합치거나 해당 행 또는 열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많은 정보가 사라지는 손실을 감안하여 통계적 검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표 3〉 형사조정 불성립 사유

| 구분 | | 전체 사건 | 주요 사건 | | |
|----------|----|--------|--------|--------|--------|
| | | | 폭행 | 상해 | 사기 |
| 가해사실 불인정 | 건수 | 175 | 10 | 30 | 40 |
| | % | 21.9% | 22.2% | 30.3% | 14.5% |
| 합의금액 불일치 | 건수 | 276 | 20 | 50 | 61 |
| | % | 34.5% | 44.4% | 50.5% | 22.2% |
| 합의사항 불이행 | 건수 | 79 | 1 | 2 | 48 |
| | % | 9.9% | 2.2% | 2.0% | 17.5% |
| 변제능력 없음 | 건수 | 63 | 1 | 2 | 41 |
| | % | 7.9% | 2.2% | 2.0% | 14.9% |
| 변제방법 차이 | 건수 | 31 | 0 | 1 | 23 |
| | % | 3.9% | .0% | 1.0% | 8.4% |
| 조정거부 | 건수 | 76 | 8 | 10 | 23 |
| | % | 9.5% | 17.8% | 10.1% | 8.4% |
| 조정회의 불참 | 건수 | 24 | 2 | 0 | 13 |
| | % | 3.0% | 4.4% | .0% | 4.7% |
| 기타 | 건수 | 75 | 3 | 4 | 26 |
| | % | 9.4% | 6.7% | 4.0% | 9.5% |
| 계 | 건수 | 799 | 45 | 99 | 275 |
| | % | 100.0% | 100.0% | 100.0% | 100.0% |

다음으로 사건의 특성을 고소사건과 인지사건, 일방적 가해(피해)사건과 쌍방 가해(피해)사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형사조정 사건 중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화 된 것이 56.0%이고, 경찰의 인지로 사건화 된 것이 44.0%인데, 폭행과 상해 사건은 고소로 인한 사건의 비율이 각각 20.8%, 30.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사기 사건의 96.6%와 크게 대비를 이룬다. 폭행과 상해 사건의 성격상 인지사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조정 제도 도입 초기에 형사조정이 고소사건으로 인한 검찰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한편 일방/쌍방 사건의 비율을 보면, 폭행과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쌍방 사건이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사기 사건은 일방 사건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형사조정 사건의 특성

| 구분 | | | 전체 사건 | 주요 사건 | | |
|----------|----|----|-------|-------|-------|-------|
| | | | | 폭행 | 상해 | 사기 |
| 고소 인지 | 고소 | 건수 | 1223 | 41 | 125 | 534 |
| | | % | 56.0% | 20.8% | 30.5% | 96.6% |
| | 인지 | 건수 | 962 | 156 | 285 | 19 |
| | | % | 44.0% | 79.2% | 69.5% | 3.4% |
| 일방 쌍방 | 일방 | 건수 | 1888 | 141 | 220 | 545 |
| | | % | 87.0% | 71.9% | 53.8% | 99.6% |
| | 쌍방 | 건수 | 283 | 55 | 189 | 2 |
| | | % | 13.0% | 28.1% | 46.2% | .4% |

이러한 형사조정 사건의 특성별로 조정 성립율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전체 형사조정 사건 중 고소사건의 성립율은 51.6%이고, 인지사건의 성립율은 77.0%인데,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각각 48.8%, 83.9%로 그 격차가 더욱 커진다. 반면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사건의 성립율이 68.0%로 높게 나타나고, 인지사건의 성립율도 77.0%로 높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고소사건에 비해서 인지사건의 조정 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사조정 개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인지사건에 비해서 더 오래 전에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고 갈등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형사사건화 의지와 처벌을 원하는 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경향이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확연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방사건과 쌍방사건을 비교하면, 쌍방사건의 조정 성립율이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당사자 양측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한 결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표 5〉 형사조정 사건의 특성과 성립 여부

| 구분 | | 전체 사건 | 주요 사건 | | | |
|----------|-----|-------|-------|-------|-------|--------|
| | | | 폭행 | 상해 | 사기 | |
| 고소 사건 | 성립 | 건수 | 363 | 20 | 85 | 254 |
| | | % | 51.6% | 48.8% | 68.0% | 47.9% |
| | 불성립 | 건수 | 341 | 21 | 40 | 276 |
| | | % | 48.4% | 51.2% | 32.0% | 52.1% |
| 인지 사건 | 성립 | 건수 | 431 | 130 | 217 | 15 |
| | | % | 77.0% | 83.9% | 77.0% | 78.9% |
| | 불성립 | 건수 | 129 | 25 | 65 | 4 |
| | | % | 23.0% | 16.1% | 23.0% | 21.1% |
| 일방 사건 | 성립 | 건수 | 587 | 103 | 146 | 266 |
| | | % | 58.0% | 73.0% | 66.7% | 49.2% |
| | 불성립 | 건수 | 425 | 38 | 73 | 275 |
| | | % | 42.0% | 27.0% | 33.3% | 50.8% |
| 쌍방 사건 | 성립 | 건수 | 202 | 46 | 155 | - |
| | | % | 82.8% | 85.2% | 82.9% | - |
| | 불성립 | 건수 | 42 | 8 | 32 | 2 |
| | | % | 17.2% | 14.8% | 17.1% | 100.0% |

다음으로 사건 당사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전체 형사조정 사건 중에서 당사자 간에 잘 아는 사이인 경우는 44.5%이고, 사건 관련해서 알게 된 사이가 24.6%, 전혀 모르는 사이가 30.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행과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가 55.4%, 40.5%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기 사건(13.1%)과는 판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6〉 사건 당사자 간의 관계

| 구분 | | 전체 사건 | 주요 사건 | | |
|--------------------|----|-------|-------|-------|-------|
| | | | 폭행 | 상해 | 사기 |
| 잘 아는 사이 | 건수 | 969 | 75 | 221 | 278 |
| | % | 44.5% | 38.5% | 53.9% | 50.7% |
| 사건 관련해서 알게 된 사이 | 건수 | 535 | 12 | 23 | 198 |
| | % | 24.6% | 6.2% | 5.6% | 36.1% |

| 구분 | | 전체 사건 | 주요 사건 | | |
|-----------|----|--------|--------|--------|--------|
| | | | 폭행 | 상해 | 사기 |
| 전혀 모르는 사이 | 건수 | 673 | 108 | 166 | 72 |
| | % | 30.9% | 55.4% | 40.5% | 13.1% |
| 계 | 건수 | 2177 | 195 | 410 | 548 |
| | % | 100.0% | 100.0% | 100.0% | 100.0% |

이상의 사건 당사자 간의 관계별로 조정 성립 여부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전체 형사조정 사건의 당사자 관계별 조정 성립율을 보면,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는 조정 성립율이 56.5%이지만, 사건 관련해서 알게 된 사이에서는 59.4%,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는 72.2%로 당사자 간 가까운 사이일수록 성립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폭행과 상해 사건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표 7> 사건 당사자의 관계별 조정 성립 여부

| 구분 | | | 전체 사건 | 주요 사건 | | |
|-----------------|-----|----|-------|-------|-------|-------|
| | | | | 폭행 | 상해 | 사기 |
| 잘 아는 사이 | 성립 | 건수 | 546 | 51 | 158 | 124 |
| | | % | 56.5% | 68.0% | 71.8% | 44.9% |
| | 불성립 | 건수 | 420 | 24 | 62 | 152 |
| | | % | 43.5% | 32.0% | 28.2% | 55.1% |
| 사건 관련해서 알게 된 사이 | 성립 | 건수 | 317 | 9 | 16 | 103 |
| | | % | 59.4% | 75.0% | 69.6% | 52.3% |
| | 불성립 | 건수 | 217 | 3 | 7 | 94 |
| | | % | 40.6% | 25.0% | 30.4% | 47.7% |
| 전혀 모르는 사이 | 성립 | 건수 | 482 | 89 | 126 | 41 |
| | | % | 72.2% | 82.4% | 76.8% | 57.7% |
| | 불성립 | 건수 | 186 | 19 | 38 | 30 |
| | | % | 27.8% | 17.6% | 23.2% | 42.3% |

위와 같은 차이는 사건으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감정악화와 갈등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로 잘 아는 사이의 사건은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 등 사건 외적인 측면이 작용하여 합의를 이루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혀 모르는 사이는 사건 이외에 특별한 감정이나 갈등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합

의를 이끌어 내기 쉬운 것이다. 전혀 모르는 사이의 형사조정은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으나 서로 잘 아는 사이는 피해회복과 더불어 감정의 양금을 털어내는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경우에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역량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형사조정의 의의와 과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체 형사조정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금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2백만원 이하 사건이 27.0%로 가장 많지만 비교적 고액 사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를 주요 사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폭행과 상해 사건의 경우 2백만원 이하의 피해가 62.5%에서 68.5%에 이르고 있으며 사기의 경우에는 10.2%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천만 원을 초과하는 피해금액의 분포에서는 그 반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기와 같은 금전피해 관련 사건은 피해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형사조정 의뢰대상 사건에 포함되지만, 신체피해 관련 사건은 상대적으로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사건이 조정의뢰 대상 사건에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피해금액의 분포

| 구분 | 건수 | 전체 사건 | 주요 사건 | | |
|----------|----|--------|--------|--------|--------|
| | | | 폭행 | 상해 | 사기 |
| 2백만 원 이하 | 건수 | 339 | 10 | 61 | 55 |
| | % | 27.0% | 62.5% | 68.5% | 10.2% |
| 5백만 원 이하 | 건수 | 231 | 4 | 12 | 79 |
| | % | 18.4% | 25.0% | 13.5% | 14.7% |
| 1천만 원 이하 | 건수 | 171 | 1 | 10 | 71 |
| | % | 13.6% | 6.3% | 11.2% | 13.2% |
| 3천만 원 이하 | 건수 | 242 | 1 | 5 | 142 |
| | % | 19.3% | 6.3% | 5.6% | 26.4% |
| 5천만 원 이하 | 건수 | 92 | - | 1 | 64 |
| | % | 7.3% | - | 1.1% | 11.9% |
| 5천만 원 초과 | 건수 | 181 | - | - | 126 |
| | % | 14.4% | - | - | 23.5% |
| 계 | 건수 | 1256 | 16 | 89 | 537 |
| | % | 100.0% | 100.0% | 100.0% | 100.0% |

한편 피해금액 규모별 합의 성립율을 보면 <표 9>와 같다. 형사조정에 의뢰된 전체 사건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피해금액이 2백만 원 이하인 사건의 합의 성립율은 73.1%인 반면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합의 성립율은 37.6%와 26.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그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폭행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액 사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상황에서 소액 사건의 조정 성립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 대상 사례 수가 적은 고액 폭행사건을 제외하면, 피해금액 규모에 따라서 조정 성립율의 편차가 크지 않다.

<표 9> 피해금액 규모별 합의 성립율의 분포

| 구분 | 전체 사건 | 주요 사건 | | |
|----------|-------|-------|--------|-------|
| | | 폭행 | 상해 | 사기 |
| 2백만 원 이하 | 73.1% | 90.0% | 78.3% | 72.7% |
| 5백만 원 이하 | 64.1% | 75.0% | 66.7% | 66.7% |
| 1천만 원 이하 | 63.4% | 0.0% | 60.0% | 53.5% |
| 3천만 원 이하 | 53.7% | 0.0% | 60.0% | 54.2% |
| 5천만 원 이하 | 37.6% | - | 100.0% | 37.5% |
| 5천만 원 초과 | 26.3% | - | - | 24.2% |
| 계 | 57.1% | 75.0% | 73.9% | 48.9% |

형사조정을 통해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사건의 합의서 등에 기재되는 내용 중 주요 사항은 합의금액과 합의금액의 지불방법이다. 형사조정이 성립된 전체 사건 중에서 합의금액의 유무의 비율(<표 10>)을 보면, 일정한 합의금액이 있는 사건은 78.3%로 나타났으며, 합의금액 없이 성립된 사건은 21.7% 이었다.

<표 10> 조정 성립시 합의금액의 유무

| 구분 | | 전체 사건 | 주요 사건 | | |
|---------|----|--------|--------|--------|--------|
| | | | 폭행 | 상해 | 사기 |
| 합의금액 있음 | 건수 | 1051 | 83 | 213 | 250 |
| | % | 78.3% | 55.3% | 70.8% | 93.6% |
| 합의금액 없음 | 건수 | 292 | 67 | 88 | 17 |
| | % | 21.7% | 44.7% | 29.2% | 6.4% |
| 계 | 건수 | 1343 | 150 | 301 | 267 |
| | % | 100.0% | 100.0% | 100.0% | 100.0% |

상당수 사건이 합의금액 없이 조정이 성립된다는 것은 형사조정을 통하여 단순히 금전적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거래 없이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화해를 통하여 사건이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피해 회복을 넘어서 관계회복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합의금액 없이 합의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형사조정위원의 역할이 크게 발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형사조정 의뢰 사건 중 경미한 신체적 피해사건의 증가와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기 사건과는 다르게 폭행과 상해 사건의 경우는 합의금액 없는 조정 성립사건의 비율(44.7%와 29.2%)이 전체 사건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건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이라는 형사조정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당사자 간 일정한 합의금액의 지불을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된 사건의 피해금액 대비 합의금액의 비율을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피해금액 대비 합의금액의 비율

| 구분 | | 전체 사건 | 주요 사건 | | |
|---------|----|--------|--------|--------|--------|
| | | | 폭행 | 상해 | 사기 |
| 50% 미만 | 건수 | 66 | - | 3 | 30 |
| | % | 10.7% | - | 6.3% | 12.7% |
| 50% 이상 | 건수 | 164 | 1 | 5 | 77 |
| | % | 26.5% | 9.1% | 10.4% | 32.5% |
| 100% | 건수 | 310 | 7 | 21 | 112 |
| | % | 50.2% | 63.6% | 43.8% | 47.3% |
| 100% 초과 | 건수 | 54 | 1 | 11 | 16 |
| | % | 8.7% | 9.1% | 22.9% | 6.8% |
| 200% 초과 | 건수 | 24 | 2 | 8 | 2 |
| | % | 3.9% | 18.2% | 16.7% | .8% |
| 계 | 건수 | 618 | 11 | 48 | 237 |
| | %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비율 | | 98.2% | 177.1% | 138.1% | 86.8% |

형사조정에 의뢰된 전체 사건을 중심으로 합의가 성립된 각 사건의 피해금액 대비 합의금액 비율의 평균은 98.2%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합의금액 비율의 분포를 보면, 절반 가량(50.2%)이 피해금액과 합의금액이 동일하였으며 피해금액보다 합의금액이 적은 경우는 37.2%(10.7+26.5)이며, 합의금액이 피해금액보다 많은 경우는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주요 사건별로 살펴보면, 피해금액과 합의금액이 동일한 사건(100%)의 비율이 폭행 사건은 63.6%, 상해 사건은 43.8%로 나타났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절반 가량에서 피해금액과 합의금액이 동일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금액보다 합의금액이 더 많은 사건의 비율은 폭행 사건은 27.3%(9.1+18.2), 상해 사건은 39.6%(22.9+16.7)로 사기 사건의 7.6%(6.8+0.8)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 결과 합의금액의 평균 비율에서 폭행이 177.1%, 상해 138.1%로 사기 사건의 86.8%와 큰 차이를 보였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피해로 인한 피해에 부가하여 경제활동 기회 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신체피해로 인해서 예상되는 미래 후유증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별도의 금액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형사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사건 중에서 실제로 합의 내용이 실행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합의가 성립된 전체 사건 중 74.8%는 합의내용이 모두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혀 실행되지 않은 사건은 7.5%, 일부만 실행된 사건은 3.4%였으며, 실행 여부가 미상인 사건은 14.5%로 나타났다. 특히 합의 내용의 실행 여부가 미상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완전히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부분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2〉 합의 내용의 실행 정도

| 구분 | | 전체 사건 | 주요 사건 | | |
|--------|----|--------|--------|--------|--------|
| | | | 폭행 | 상해 | 사기 |
| 실행 | 건수 | 788 | 77 | 203 | 125 |
| | % | 74.6% | 96.3% | 91.0% | 50.0% |
| 일부실행 | 건수 | 36 | - | 1 | 18 |
| | % | 3.4% | - | .4% | 7.2% |
| 전부 미실행 | 건수 | 79 | - | 6 | 35 |
| | % | 7.5% | - | 2.7% | 14.0% |
| 미상 | 건수 | 153 | 3 | 13 | 72 |
| | % | 14.5% | 3.8% | 5.8% | 28.8% |
| 계 | 건수 | 1056 | 80 | 223 | 250 |
| | % | 100.0% | 100.0% | 100.0% | 100.0% |

이러한 결과를 주요 사건별로 비교하면,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합의 내용 실행 비율은 각각 96.3%, 91.0%로 매우 높은 반면에 미상의 비율이 3.8%, 5.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사기 사건의 비율과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폭행과 상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합의금액을 비롯한 합의 내용 실행이 비교적 쉽고,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고액 사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Ⅲ. 형사조정 후 범죄유형별 처분

검찰은 형사조정을 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처분을 하게 된다. 형사조정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는 <표 13>, <표 14>와 같다.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성립된 전체 사건 중에서 87.2%가 불기소되었으며, 약식기소된 사건은 10.5%, 기소된 사건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정 불성립된 사건 중에서는 42.8%가 불기소 처리되고 57.3%(17.0+40.3)가 기소(약식기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합의가 성립된 사건의 87.2%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정이 성립된 폭행 사건의 96.0%, 상해 사건의 87.6%가 불기소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86.8%로 폭행 사건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타나서 조정 성립이 불기소처분에 미치는 영향력이 폭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폭행 사건이 가지는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 때문으로 보여진다. 형사조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검사가 형사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으로 판단하고 형사조정을 의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사조정을 통한 당사자 간 합의 성립여부가 검찰의 처분결정에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조정의 성립은 불기소처분의 유형을 살펴보면 검찰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판단할 수 있다.

〈표 13〉 형사조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

| 구분 | | | 전체 사건 | 주요 사건 | | |
|--------------|------|----|--------|--------|--------|--------|
| | | | | 폭행 | 상해 | 사기 |
| 조정 성립 사건 | 불기소 | 건수 | 1169 | 144 | 262 | 231 |
| | | % | 87.2% | 96.0% | 87.6% | 86.8% |
| | 기소 | 건수 | 30 | 1 | 3 | 15 |
| | | % | 2.2% | .7% | 1.0% | 5.6% |
| | 약식기소 | 건수 | 141 | 5 | 34 | 20 |
| | | % | 10.5% | 3.3% | 11.4% | 7.5% |
| 계 | | 건수 | 1340 | 150 | 299 | 266 |
| | | % | 100.0% | 100.0% | 100.0% | 100.0% |
| 조정 불성립 사건 | 불기소 | 건수 | 348 | 9 | 23 | 178 |
| | | % | 42.8% | 19.6% | 21.5% | 65.4% |
| | 기소 | 건수 | 138 | 5 | 13 | 56 |
| | | % | 17.0% | 10.9% | 12.1% | 20.6% |
| | 약식기소 | 건수 | 328 | 32 | 71 | 38 |
| | | % | 40.3% | 69.6% | 66.4% | 14.0% |
| 계 | | 건수 | 814 | 46 | 107 | 272 |
| | | % | 100.0% | 100.0% | 100.0% | 100.0% |

조정 성립시 불기소처분 유형으로는, 기소유예 비율이 5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고소철회로 인한 공소권 없음이 31.6%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정 불성립시에

는 불기소의 유형으로는 혐의 없음이 71.6%로 가장 높고 공소권 없음과 기소유예는 각각 6.0%와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성립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고려하여 불기소처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조정 불성립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는 주로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성립 여부가 검찰의 처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불기소 유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폭행과 상해 사건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조정 성립된 폭행 사건의 불기소 유형은 공소권 없음과 기소유예 비율이 77.6%와 21.0%이고, 상해 사건의 불기소 유형은 기소유예가 94.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사기 사건의 불기소 유형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의 불기소 유형은 혐의 없음이 52.4%라는 점을 감안하면 형사조정 결과의 영향력은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검찰의 불기소처분 유형

| 구분 | | | 전체 사건 | 주요 사건 | | |
|--------------|--------|----|--------|--------|--------|--------|
| | | | | 폭행 | 상해 | 사기 |
| 조정 성립 사건 | 혐의 없음 | 건수 | 167 | 2 | 7 | 121 |
| | | % | 14.3% | 1.4% | 2.7% | 52.4% |
| | 죄가 안됨 | 건수 | 2 | - | 1 | - |
| | | % | .2% | - | .4% | - |
| | 공소권 없음 | 건수 | 369 | 111 | 4 | 5 |
| | | % | 31.6% | 77.6% | 1.5% | 2.2% |
| | 기소유예 | 건수 | 599 | 30 | 247 | 85 |
| | | % | 51.2% | 21.0% | 94.3% | 36.8% |
| | 기소중지 | 건수 | 4 | - | - | 3 |
| | | % | .3% | - | - | 1.3% |
| | 각하 | 건수 | 22 | - | 2 | 15 |
| | | % | 1.9% | - | .8% | 6.5% |
| | 기타 | 건수 | 6 | - | 1 | 2 |
| | | % | .5% | - | .4% | .9% |
| 계 | | 건수 | 1169 | 143 | 262 | 231 |
| | | % | 100.0% | 100.0% | 100.0% | 100.0% |
| 조정 불성립 사건 | 혐의 없음 | 건수 | 250 | 2 | 5 | 155 |
| | | % | 71.6% | 22.2% | 21.7% | 86.6% |

| 구분 | | | 전체 사건 | 주요 사건 | | |
|--------|----|-------|--------|--------|--------|--------|
| | | | | 폭행 | 상해 | 사기 |
| 죄가 안됨 | 건수 | 2 | - | - | - | |
| | % | .6% | - | - | - | |
| 공소권 없음 | 건수 | 21 | 2 | 1 | 1 | |
| | % | 6.0% | 22.2% | 4.3% | .6% | |
| 기소유예 | 건수 | 46 | 5 | 15 | 5 | |
| | % | 13.2% | 55.6% | 65.2% | 2.8% | |
| 기소중지 | 건수 | 21 | - | 1 | 14 | |
| | % | 6.0% | - | 4.3% | 7.8% | |
| 각하 | 건수 | 4 | - | 0 | 3 | |
| | % | 1.1% | - | .0% | 1.7% | |
| 기타 | 건수 | 5 | - | 1 | 1 | |
| | % | 1.4% | - | 4.3% | .6% | |
| 계 | | 건수 | 349 | 9 | 23 | 179 |
| | | % | 100.0% | 100.0% | 100.0% | 100.0% |

검찰에서 형사조정 대상으로 의뢰된 사건은 전통적인 형사절차인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사사법기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피해자는 피해의 조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면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당사자 간의 관계회복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형사조정 사건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보는 것은 형사조정의 효과에서 매우 중요하다.¹⁰⁾

다음으로 형사조정 의뢰된 사건의 조정 성립 여부에 따라서 사건 처리 기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형사조정회의 개최일로부터 검찰의

10) 형사조정의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형사조정에 의뢰되지 않는 사건과 형사조정에 의뢰되어 합의가 성립된 사건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형사사건이 형사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형사조정에 의뢰되지 않는 사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더욱이 형사조정에 의뢰되지 않는 사건과 의뢰되는 사건이 성격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자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형사조정에 의뢰된 사건을 바탕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된 사건과 성립되지 않는 사건을 비교하여 합의 성립의 효과가 사건처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형사조정 의뢰 대상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의 차이에 의한 효과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분일까지의 기간과 검찰의 처분일로부터 법원의 1심 선고일까지의 기간을 조정 성립 사건과 불성립 사건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전체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형사조정회의 개최일로부터 검찰의 처분 결정일 까지 소요기간을 보면, 합의가 성립된 사건은 불기소처분시 평균 23일, 약식기소 처분시 40일, 기소 처분시 5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불성립된 사건의 경우에는 64일, 47일, 6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처분을 받아도 최소 7일에서 최대 41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불기소처분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5〉 형사조정 후 사건 처리 평균 소요일

| 구분 | | | 진행단계별 평균 소요일 | | 계 |
|-------|----------|-------|-------------------|---------------|------|
| 사건 | 조정 성립 여부 | 검찰 처분 | 형사조정회의 개최 → 검찰 처분 | 검찰 처분 → 법원 선고 | |
| 전체 사건 | 성립 | 불기소 | 23일 | - | 23일 |
| | | 약식기소 | 40일 | 42일 | 82일 |
| | | 기소 | 54일 | 124일 | 178일 |
| | 불성립 | 불기소 | 64일 | - | 64일 |
| | | 약식기소 | 47일 | 48일 | 96일 |
| | | 기소 | 66일 | 140일 | 206일 |
| 주요 사건 | 폭행 | 불기소 | 15일 | - | 15일 |
| | | 약식기소 | 25일 | 41일 | 66일 |
| | | 기소 | 10일 | 40일 | 50일 |
| | 상해 | 불기소 | 18일 | - | 18일 |
| | | 약식기소 | 23일 | 56일 | 79일 |
| | | 기소 | 52일 | 47일 | 99일 |
| | 사기 | 불기소 | 36일 | - | 36일 |
| | | 약식기소 | 63일 | 38일 | 101일 |
| | | 기소 | 71일 | 174일 | 245일 |

사건 유형별로 성립된 사건을 기준으로 처리 기간을 비교하면, 폭행 사건의 경우 불기소될 경우 15일, 약식기소될 경우 66일, 정식기소될 경우 50일이고, 상해 사건

의 경우 18일, 79일, 99일로 전체 사건에 비해서 더욱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기 사건의 36일, 101일, 245일에 비하면 더욱더 차이가 난다. 따라서 폭력 관련 사건의 형사조정 효과는 더욱 크다는 것을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건 처리 기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당사자의 일상에 미치는 효과, 경제적 효과,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면 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의 효과는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살펴 본 형사조정에서 범죄유형에 따른 사건의 특성과 처분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폭행 및 상해 사건의 조정 성립율은 형사조정 사건 전체의 성립율보다 높고, 특히 폭행 사건의 성립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만 조정 성립율은 높지만 불성립되는 경우에 주로 합의금액 불일치와 폭행 사건의 경우에 조정 거부로 인한 조정 불성립 비율이 17.8%와 10.1%로 사기 사건에 비해서 더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형사조정을 의뢰하기 전 자발적인 동의 및 참여가 필요는 물론 형사조정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당사자 간의 갈등과 분노의 감정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더욱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 간의 갈등기간이 긴 고소사건 보다는 인지사건이 많고, 일방적인 가해나 피해사건보다 쌍방 간의 가해 피해 사건이 많으므로 심각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조정 성립을 유도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오히려 조정 성립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잘 아는 사이 일수록 배신감, 감정 악화 등 갈등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으로 형사조정위원회는 회의 전 사건 검토시 반드시 당사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형사조정 회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 합의 금액의 평균 비율에서도 사기 사건과는 다르게 폭행과 상해 사건은 큰 차이를 보였다. 때문에 치료비 등 직접적인 피해금액 이외에 노동손실 등 경제적 손실과 향후 후유증을 고려한 피해 예상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의 차원에서 추가 금액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형사조정 회

의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감안하여 적절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합의금액 없이 조정이 성립되는 사건도 매우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쌍방 사건일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며, 이러한 점을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전 사건 내용 파악시 염두에 두고 조정에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조정이 성립된 후에 합의내용의 실행에 있어서 다른 유형의 사건에 비해서 그것의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소액사건, 쌍방사건의 비율이 높다는 유리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조정이 이루어지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가 적다는 점은 형사조정에서 가해자를 믿지 못하는 피해자를 설득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형사조정을 통한 조정성립이 검찰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성립시 불기소 비율이 높고, 특히 폭행은 더욱 그렇다. 또한 불기소 사유에서는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더욱더 조정성립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당사자를 설득하는데 조정위원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정위원 역시 조정성립의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조정성립된 사건의 사건처리 기간은 불성립 사건에 비해서 훨씬 짧았는데,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욱더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적 단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사실을 조정위원들은 당사자에게 조정의 중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조정 성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요 형사조정 사건의 형사조정 관련 특성과 조정 후 처분 결과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형사조정을 위한 개선방안 및 보완점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형사조정 과정 및 결과 중심의 연구라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형사조정 의뢰 사건의 구체적인 특성과 형사조정의 성립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와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용욱, “한국의 형사조정: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19(2), 2008, 212-214.
- 박미숙 · 이진국,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6-AA-06, 2016, 17-124.
- 안성훈 · 윤현석,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AA-07, 2014, 1-221.
- 이동원, “형사조정프로그램과 조정위원의 역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20(1), 2009, 1019-1044.
- _____, 윤현석, “형사조정의 실시 현황과 결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 분석: 2010년과 2014년 형사조정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18(1), 2016, 182.
- 임철 · 장지상 · 오정일, “양형기준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형량의 평균과 편차에 대한 분석”,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15(1), 2018, 138-139.
- 조근석 · 이동원, “형사조정프로그램의 실효성 평가”,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20(2), 2012, 285-312.
- _____, “형사조정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24(3), 2016, 201-224.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 8-17.

2. 외국문헌

- McCold., *A Survey of Assessment Research on Mediation and Conferencing*, In Walgrave(ed.), *Repositioning Restorative Justice*, WILLAN PUBLISHING, 67-120, 2003.

McCorkle, Suzanne & Melanie J. Reese., *Mediation theory and practice*, SAGE Publications, 1-247, 2014.

Moore, Christopher W., *The mediation process: Practical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3rd ed)*, John Wiley & Sons, 1-559, 2014.

Umbreit, M. S., Coates, R. B. & Vos, Betty, *The Impact of Restorative Justice Conferencing: A Review of 63 Empirical Studies in 5 Countries*, Center of Restorative Justice and Peacemaking, Univ. of Minnesota, 1-21, 2002.

Empirical Study on Characteristics of Criminal Mediation Based on the Types of Criminal Offenses : Focusing on assaults, bodily injury and fraud

Lee, Dong-weon* · Yoon, Hyun-seok**

This study aims to present techniques and clues to elevate the probability of reaching criminal mediation as well as to suggest matters to prepare in advance for criminal mediations by analyzing the results of criminal mediations according to the types of criminal offenses based on empirical data. Accordingly, the study analyzed record surveys of major cases where 20 cases were randomly extracted from criminal mediations conducted by the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under 58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s (including their branch offices) around the nation in 2011 and 2015; subsequently, the study summarized the procedures of criminal mediation by the types of criminal offences and dispositions following the mediations based on the analysis above and also presented improvement measures.

First, the probability of reaching mediation for assault and bodily injury case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entire criminal mediation cases; especially, the probability of reaching mediation for assault cases was found significantly high. Criminal mediation requires voluntary consent and participation prior to its petition, and when parties attend the mediation, more efforts need to be made to mitigate the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as well as their emotional rage. It is also necessary to encourage proper settlements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for additional monetary payments to arise from financial losses aside from the amounts for direct damages, anticipated damages and compensation for mental suffering with future aftereffects reflected. Moreover, the analysis showed that assault and bodily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in Wonkwang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Law in Kwangju Women's University

injury cases are very likely to end up having the settlement fulfilled following the completion of mediation, which can be useful when victims reluctant to trust assailants need to be convinced.

Second, the study showed that the completion of mediation through criminal mediations significantly affects the dispositions made by the prosecutions. Its rate of non-prosecution was found higher than other cases, and the period of processing the cases of which mediation was completed was shorter than that of the cases of which mediation was failed where such period for assault or bodily injury cases was found particularly much shorter. Such findings allow predicting a variety of positive effects in addition to a time saving factor, and they serve the members of the Criminal Medication Committee as important information that can be utilized to explicate the significance and positive impacts delivered by the criminal mediation to involved parties; furthermore, they can be a useful tool to encourage involved parties to aggressively endeavor to complete the criminal mediation.

❖ Keyword: criminal mediation,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damage recovery, assaults, bodily injury, fraud